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8호)

심 사 보 고 서

1998. 6.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6. 1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8. 6. 11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8. 6. 19 상임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비합리적인 용어 및 서식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일치 및 비합리적인 용어개선 보완(안 제2조제1,2,5호, 제5조제1항)
-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을 정비(안 제6조 및 별표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서식 등 내용을 바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의 용어 정의는
- 답 : 환경개선은 포괄적 광의의 표현이고, 주거환경개선은 개괄적 협의의 의미함축.

- 문 :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비율 POOL화 해서 집행할 의의는
- 답 : 법률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6.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